

의안 번호	8
----------	---

2026. 7.

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
----------	---

제출년월일 : 2026. 7. 9.

제 출 자 : 창 원 시 장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법」 제78조제3항에서 공무원제안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시민과 공무원 제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규칙으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시민제안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는 한편, 시민제안에 관한 상위 법령인 「국민 제안 규정」에서 기관별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법령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정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안 제명)

- 현행: 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 개정: 창원시 시민 제안 조례

나. 접수된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소관 부서별로 설치·운영하도록 한 제안실무심사위원회를 실무 운영에 적합하도록 소관 부서의 실무심사와 추가 심사 필요시 제안실무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다. 우수제안의 등급결정 및 시상 범위 결정 등을 위한 창원시 우수 제안심사위원회의 역할을 창원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으나, 자체 위원회로 두도록 정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제10조)
- 라. 우수제안의 등급(금·은·동·장려상)과 시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1조 및 제12조)
- 마. 「국민 제안 규정」 상 정하고 있는 시민제안의 제출, 접수, 심사 및 실시 등에 관한 내용을 현행 조례에서 삭제하는 대신 그에 대한 사항을 규정대로 적용함을 명확히 함.(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1

- 「국민 제안 규정」 제1조, 제2조, 제5조~제12조, 제14조, 제18조, 제20조~제23조, 제25조~제27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6. 5. 29.~6. 18.) 결과: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2
- 4)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
- 5) 현행 조례: 붙임 3

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창원시 시민 제안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라 창원시 행정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이 창원시에 제출하는 시민 제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제안”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이 시의 정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으로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3. “우수제안”이란 채택제안 중 제7조에 따른 심의 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4. “자체우수제안”이란 시장이 우수제안 중 경상남도지사에게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제안 제도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안하려는 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의 제작에 필요한 경우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실무심사) ① 시장은 접수된 시민제안의 채택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소관 부서(접수된 제안과 관련된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실무심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심사에는 소관 부서의 장, 담당 팀장, 담당 주무관이 참여하고 「국민 제안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제6조(제안실무회의)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실무심사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안업무 총괄부서의 장 및 담당 팀장 등으로 구성된 제안실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창원시 우수제안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우수제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심사
2. 우수제안 채택 및 등급의 결정
3. 부상 및 상여금의 지급 결정
4. 실시 성과의 평가
5. 자체우수제안 결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심의가 완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안업무 총괄 부서 실·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채택제안 관련 본청 실·국장

2. 위촉직: 채택제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심사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① 심사위원회에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제안업무 총괄부서의 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우수제안의 등급) 시장은 우수제안의 등급을 금상·은상·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심사위원회에서 그 등급에 해당하는 시민제안

이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12조(시상 등) ① 시장은 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副賞)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1. 금상: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2. 은상: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 동상: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4. 장려상: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②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우수제안 등급에 해당하지 않은 채택제안 중 상위 점수를 받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다른 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시민제안의 제출, 접수, 심사 및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 제안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민제안은 이 조례에 따른 제안으로 본다.

■ 국민 제안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라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 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제안”이란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른 행정청(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에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삭제

3. “채택제안”이란 행정청이 접수한 국민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4. “자체우수제안”이란 행정청이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국방·군사에 관한 제안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추천한 것을 말한다.
5. “중앙우수제안”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체우수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제5조(국민제안의 제출) ① 모든 국민은 제안 내용의 소관 행정청에 국민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국민제안을 제출하려는 국민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장애인이 국민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민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④ 둘 이상 행정청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국민제안의 경우에는 국민제안의 주된 내용의 소관 행정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6조(국민제안의 접수 등) ① 행정청은 제출된 국민제안을 신속히 접수해야 한다.

② 행정청은 접수한 국민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
 2.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안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 ③ 행정청이 접수한 국민제안 중 내용이 같은 국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국민제안이 우선한다.
- ④ 행정청은 제안자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제안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하거나 민원으로 접수하여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결처리
2.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결처리 또는 민원처리

⑤ 삭제

⑥ 행정청은 제출된 국민제안이 다른 행정청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소관 행정청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⑦ 행정청은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해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제안에 대해서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7조(접수 및 처리 상황의 공개 등) 행정청은 국민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국민제안의 제목과 채

택 여부를 제외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국민제안의 심사) ① 행정청은 제6조에 따라 접수한 국민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해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② 행정청은 국민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별 국민제안 심사위원회(이하 “기관별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14조제3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를 하거나 제15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의 결정을 할 때에는 기관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기관별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전체 구성인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 공무원(행정청이 「행정절차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청에 소속된 임직원을 포함한다)이 아닌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 구성해야 한다.

제9조(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 ① 행정청은 제8조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신에 걸리는 기간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할 때에는 제안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0조(채택제안의 결정) ① 행정청은 국민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국민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행정청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해야 한다.

② 행정청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2조(재심사 요청)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행정청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제안이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 증대 등의 성과가 예상되는 경우 해당 행정청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국민제안

2. 제15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국민제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민제안의 재심사 결정 및 실시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4조(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의 재심사) ① 행정청은 제10조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제22조에 따른 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그 제안을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제12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민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2.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을 제13조에 따라 보완·개선하여 실시하려는 경우

3. 행정청이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제2호에 따라 국민제안을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를 결정해야 한다.

③ 제안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민제안이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후 해당 국민제안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가 실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행정청은 제3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해당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8

조제1항에 따른 포상을 하거나 부상(副賞)을 지급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제3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해당 정부시책 또는 행정 제도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다르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제안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8조(채택제안의 시상) ① 행정청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국민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②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국민제안 또는 「공무원 제안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원제안(이하 “공무원제안”으로 한다)으로 이미 다른 행정청으로부터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국민제안 또는 공무원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청으로부터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3.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성명, 전화번호 또는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포상 또는 부상지급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

제20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제안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우수기관이나 공무원(행정청이 「행정절차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청에 소속된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25조제3항에 따른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국민제안
2. 행정운영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한 국민제안

② 행정청은 제23조에 따라 측정된 실시 성과를 바탕으로 해당 채택제안의 채택 및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이 제2항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의 지급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실시 성과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일부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행정청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또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보상) 행정안전부장관과 행정청은 전시(展示) 등을 위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험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에 든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22조(관리기간) 행정청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

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관리해야 한다.

제23조(실시 성과의 측정) ① 행정청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따라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 증대 등의 성과가 있는 경우 그 성과를 측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 업무의 개선 성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우·미·양·가로 측정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및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 및 근무조건의 개선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예산 절감 금액 또는 국고·조세수입이 늘어난 금액을 측정할 때에는 회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국민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경비를 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시 성과의 측정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제25조(국민제안의 발굴 노력)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행정청은 국민이 국민 제안 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의 접수, 심사 방법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제안자가 국민제안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행정청은 국민제안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참여 플랫폼을 국민제안 업무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③ 행정청은 생활공감정책(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등을 조금만 개선하면 국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에 관한 생활밀착형 국민제안의 발굴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④ 행정청은 국민제안의 활성화를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민원실에서 국민제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26조(국민제안 정보의 공동 활용) 행정청은 국민제안의 심사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청이 접수한 국민제안의 제목, 내용, 제안자, 접수 일시, 채택 및 시상 여부 등 국민제안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27조(우수한 국민제안의 확산) ① 행정청은 채택한 국민제안이 다른 행정청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행정청에 그 국민제안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언론매체, 행정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체우수제안이나 중앙우수제안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창원시 우수제안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6조), 우수제안의 등급(안 제10조), 시상 등(제11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창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창원시 우수제안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6조), 우수제안의 등급(안 제10조), 시상 등(제11조)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 제외

4. 작성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김태호

■ **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에 관심있는 자와 창원시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정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업무혁신을 도모하고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국민 또는 창원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창원시의 행정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아이디어 제안"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국민과 공무원이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 "자체우수제안"이란 시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경상남도지사에게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제2장 제안의 제출 등

제4조(제안의 제출) ① 모든 국민과 공무원은 시정시책 또는 행정제도·운영의

개선에 관하여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이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시장에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현행 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우편·모사전송 또는 제안제도를 위해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별로 제안에 대한 분담내용 및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정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국민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시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 및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8조(제안의 보완)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생활공감정책 제안의 발굴 등) 시장은 생활공감정책(조금만 제도를 개선하면 시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제안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년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제안을 발굴하여야 한다.

제10조(공모제안의 처리) 공모제안의 모집과 심사,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모계획에 따라 처리하되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장 제안심사실무위원회 등

제11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서별로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처리부서의 장이 되며, 실무위원회는 제안내용에 따라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제13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제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우수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우수제안의 등급결정 및 시상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창원시 우수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

며, 위원회의 기능은 창원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우수제안 채택 및 등급의 결정
2. 자체우수제안 결정
3.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 결정
4.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장 제안의 심사 및 시행 등

제13조(심사기준 등)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종료한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여부 결정사실을 통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견조회 등) ①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시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6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장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 등

제17조(우수제안의 등급) ① 채택제안 중 우수제안의 등급은 금상·은상·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해서는 시장표창을 수여하며, 「상훈법」·「정부 표창 규정」·「지방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모범공무원 규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장표창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른 창원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18조(자체우수제안의 추천) 제12조에 따라 결정된 자체우수제안은 경상남도에 추천할 수 있다.

제19조(인사상 특전) 시장은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20조(부상의 지급) ① 우수제안의 제안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副賞)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 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

1. 금 상 :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2. 은 상 :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 동 상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4. 장려상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5. 삭제

② 제17조에 따른 우수제안의 등급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연구·노력이 인정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상여금 지급) ① 우수제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나 제안한 공무원과 제14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공무원이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시세·세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9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되, 그 금액은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③ 상여금 지급액 결정을 위한 평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제안자가 공무원인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제안자가 미리 지정한 사람,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제23조(시상시기) 시상시기는 연 2회 반기별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시상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24조(실비보상) 시장은 필요에 의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6장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등

제25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시장은 채택제안이 성질상 시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특허법」에 따른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른 직무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삭제

제7장 채택제안의 사후관리

제26조(관리기간)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 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해서는 불채택 결정일로부터 2년 간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시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실시의 권고) 시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29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채택제안을 실시하는 부서의 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생략>